

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7
--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6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 제6조 ①항증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의 조정으로 여비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
- 동조항 제24호는 '91. 1. 22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
(“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”를 “예산회계법 제104조 제4항 제5호”로 개정)

□ 첨 부

1.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중 “예산회계법시행령제112조제1항제24호”를 예산회
계법시행령 “제104조 제4항 제5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6조(현장지도여비) ① 지방 <u>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</u> <u>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</u> <u>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</u> 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여는 국내 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다.</p>	<p>제6조(현장지도여비) ① <u>예산</u> <u>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</u> <u>제5호의</u></p>